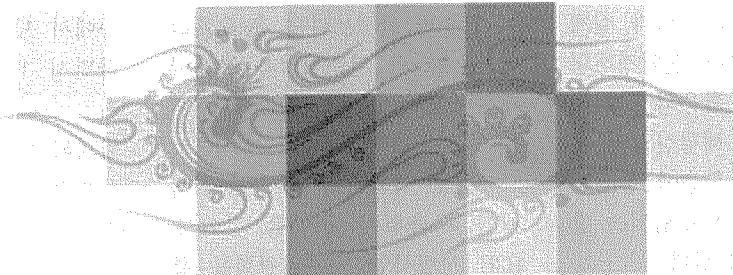




새해 이렇게 달라진다



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, 음란물 유통, 스토킹, 해킹,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.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창출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.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. 산업·정보통신·과학기술·문화·금융·기업·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.(편집자)



산업

△ **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범위에 전자무역 포함** = 1월부터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. 이에 따라 SW·디지털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데 대해서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.

△ **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제도 도입** =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등에 대해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한다.

△ **부품소재 육성 특별법 제도 도입** =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으로 부품·소재 통합연구단을 설치해 종합지원 실시, 부품·소재 투

자기관협의회 설치 및 개발 전문기업 설립지원, 신뢰성 평가·인증 제도 실시, 신뢰성 보장사업을 실시한다.

△ **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** =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거래자는 물론 판매업자에게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.

△ **전력산업 구조개편** = 발전부문의 분할 및 자회사 설립, 공정한 전기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전사간 경쟁입찰에 의한 전력거래를 위해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며 정부가 한전에 수행해온 전력분야 기술개발, 농어촌 전기보급, 환경친화 에너지 보급 등의 공익적 기능을 흡수해 수행한다.

△ **양질의 전기공급** = 500호 이상의 도서 자가



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가 정비된다.

또 올해부터 2년 주기로 향후 3~5년 사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된다.

△ **연구비 카드제 확대 실시** = 지난해 10월부터 대학·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던 연구비 카드제가 모든 연구개발주체로 확대돼 전면 시행된다.

△ **연구집단 육성** = 2002년까지 총 20개 사업 선정을 목표로 올해 5개의 신규 프런티어 연구사업단이 선정된다.

또 국가지정 연구실을 92개 신규 지정해 총 450 개 연구실이 지원되며, 연구사업단 10개 과제 및 8 개의 지역협력센터(RRC)가 선정된다.

△ **남북과학기술 협력** = 표준센터 설립, 기상협력, 자생식물 조사연구, 환경·생태계 공동연구 등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 남북과학기술교류·협력 실무협의회가 설치돼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.

△ **과태료 부과제 실시** = 허위보고 및 검사방해 등의 경우 부과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 개정된다.

△ **협회 및 조합설립 자유화** =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협회 및 조합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·조합의 사업계획, 예산안,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의무가 삭제된다.



■ 학

△ **음반, 비디오, 게임제작업 신고제로 완화** =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음반·비디오·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」(현재 국회 계류중)에 따라 음반, 비디오, 게임제작업·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.

또 청소년게임장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.

판매 및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비디오시청제공업·일반게임장업·노래연습장업은 등록제가 유지된다.



세 제

△ **전화신고 도입** = 간이사업자 및 단일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(ARS) 신고를 허용한다.

△ **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** = 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·신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도 과세된다.

△ **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** =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 때까지 유예된다.

△ **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** =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.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%에서 10%로 올라간다.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%에서 10%로 상향조정된다.

△ **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확대** = 종전의 제조업 위주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.

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된다.



새해 이렇게 달라진다



기타

△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증권 거래세 = 거래소·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·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.3%를 부담해야 한다.

△ 벤처기업간 현물출장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= 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올해 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%가 감면된다.



기업

△ 출자총액제한도시행 = 4월 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된다.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%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△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= 모든 상장법인(협회등록법인 포함)에 대한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가 30%로 완화된다.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한도가 20%로 완화된다.

△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=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·방해하면 개인은 1000만원,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 5000만원,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.

△ 보유주식변동 상황 신고 =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보유주식 현황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변동내역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 거래내역서를 추가해야 한다.

△ 퇴직공직자 동종업체 취업금지 3년으로 확대 =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그 사기업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법인·단체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다. 현행법은 퇴직전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만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.

△ 여성채용비율 25%로 확대 = 공무원 선발에서 여성 의무채용비율이 현행 20%에서 25%로 늘어난다. 여성 채용비율은 오는 2002년 30%까지 확대될 예정이다.

△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=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.

△ 리콜권고제 도입 =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·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올해 도입될 가능성성이 높다.